

양육친화 주거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¹⁾

김지혜·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이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그리고 아동 양육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에게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의 결합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 따라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전환되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을 더 이상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주거 문제의 경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물리적인 주택공급 및 주거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대한 삶의 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또한 양육지원을 위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책들은 주로 양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가구의 거주공간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

1) 본고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김지혜·이재준·이길제·김정인·조한진, 2019)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해 가구단위의 양육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양육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주거정책 분야도 공동체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위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개념

‘양육’과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명확히 정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에 대한 사전적·학문적·사회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에 기초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양육’의 사전적 정의는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함’을 의미하며, 학문적으로 백지혜(2009)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은 “아이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으로,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등

의 일상적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보호, 교육, 정서적 욕구충족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사회적으로 양육은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양육의 정의를 고려하여, 정민자 외(2008)는 양육친화(child care familiar)를 “자녀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지와 지원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주거(住居)는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하며, 학문적으로 김은혜(2005)는 주거의 의미를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그 공간을 둘러싼 건강, 보장, 환경 등의 질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⁴⁾, 주거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거정책은 좁은 의미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들로 주택 공급, 주택시장 관리 방안, 금융지원, 급여 지원 등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바라본다면,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과 주택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및 거주자의 주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육친화와 주거정책의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

2) 백지혜(2009).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 및 순응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p. 7.

3) 정민자 외(2008).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개발. 보건복지부. p. 23.

4) 김은혜(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기준 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p. 363.

의 대상은 영유아(만0~5세)와 초등학교(만6~12세)를 포함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설정한다.⁵⁾

나.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에 기초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는 주거지원 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지원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주거정책들을 상당수 포함한다. 두 번째,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말한다. 세 번째,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를 뜻하며, 여기서 주거서비스는 개별 가구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재화를 포함하는 모든 재화(service)를 의미한다.⁶⁾ 한편 양육친화적 관점에서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양육 생활지원 서비스와 양육 공동체지원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3. 양육친화 주거정책 현황 분석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2019년 발표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⁷⁾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과 가족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기존의 기본계획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기본계획(수정)에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목표 또한 ‘출산 장려’가 아닌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정책대상을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가 아닌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패러다임과 관점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 중 양육친화적 주거정책과 관련된 것은 돌봄(흠뻑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기반(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의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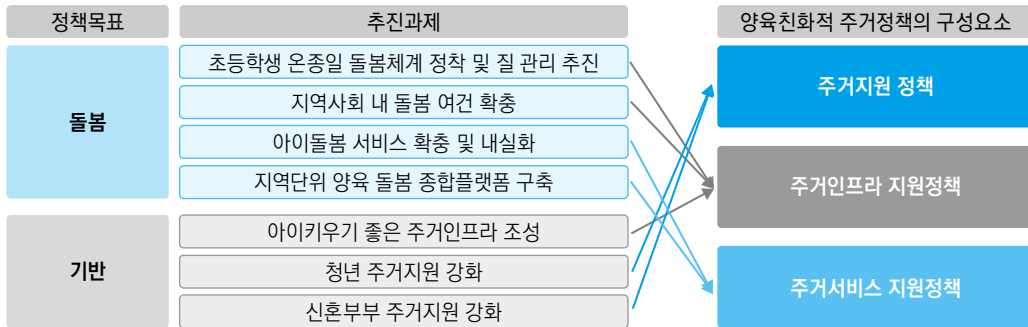
먼저 돌봄의 영역의 주요 추진과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으로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요소와 관련된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반의 영역은 ‘일자리·주거지원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거지원과 주거인프라 요소와 관련하여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

5) 양육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넓게는 태아에서 청소년까지를 포함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까지를 말함. 청소년기도 양육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축소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또한 청소년기의 양육은 주거환경보다 정서적·심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진로 결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 환경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어 영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와는 차이를 보임.

6) 서수정 외(2017).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auri brief. No.14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2.

윤주현 외(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1). 국토연구원. p. 17.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참고하여 작성.



[그림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27

부부 주거지원 강화,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 구성의 3개 추진과제가 진행 중이다.

나. 양육친화 주거정책 구성요소별 현황

1) 주거지원 정책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구성요소 중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로 구분된다. 첫째, 주택공급 측면의 양육친화적 정책은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또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비율 규정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공공·민간분양주택과 국민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수준을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의 경우는 다자녀가구보다 상대적으로 공급비율이 높은 편으로 분양(공공·민간)주택 20~30%, 공공임대주택 10~80%(영구임대 10%, 국민임대·분양전환·장기전세 30%, 행복주택 최대 80%)수준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최대거주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급면적도 자녀를 고려하여 넓은 평형 공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과 같은 특화전략을 통해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하고, 수납공간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금융지원 측면에서의 양육친화적 정책은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해 신혼부부⁸⁾ 및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금리 측면에서도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해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0.2%p, 한부모가족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70~2.75%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일반 만기별 금리

8) 주택도시보증기금·보증금의 대출대상 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대상과 동일함(주택도시보증기금. https://enhuf.molit.go.kr/2019년_11월_12일_검색)

〈표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중 주거지원 정책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분양 (민간,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분양주택에서 다자녀 가구 공급비율 규정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 (신혼부부) 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공급비율 규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 대상으로 특별공급비율 규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양육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주택 공급 공공	영구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전세(국민임대준용)에 대하여 우선공급 비율 규정 - 다자녀 가구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국민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전세(국민임대 준용), 행복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비율 규정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분양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비율 규정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행복주택		
매입임대 · 전세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 규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주택 구입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상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로 신혼부부 지원강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주택도시기금법
주택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상향 •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신혼부부 지원강화 		
주거 급여	임차급여액 산정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	주거급여법 제7조
	소득인정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교육비 실제소득 산정 제외)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유사한 금품의 실제소득 산정 제외 • 양육요인으로 인한 가구특성 지출요인 차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29

에 비해 0.3~0.4%p 더 낮은 수준이다.

세 번째, 급여지원 측면에서의 양육친화적 정책은 주거급여의 임차급여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규모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임차급여액 산정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임차급여액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보육·교육 등을 위한 보육료, 학자금,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을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양육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육친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주거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특별공급, 특화단지 공급,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주택관련 대출에 있어 지원이 부족하므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정책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의 공동이용시설과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공동체공간,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서의 주민공동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인프라 지원 측면에서의 양육친화적 정책은 공공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일반 공공주택과 별도로 어린이집 정원을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 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등을 설치 가능한 특화시설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보다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 신혼희망타운은 보육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 및 어린

〈표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중 주거인프라 지원 정책 관련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 공용취사장,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도변경)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공동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47

이 케어시설이 집적된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 케어 및 부모들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지내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단지 중앙에 집적화시킨 그로잉센터(Growing Center)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설형 공공주택 외에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棟)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아이 돌봄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인프라 정책은 필요시설의 공급을 위해 주택 유형 및 신규 공급 여부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신규공급과 기존단지에 따라 양육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지는 관련 법령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양육 시설에 대한 수요 및 필요 시설의 종류, 공급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급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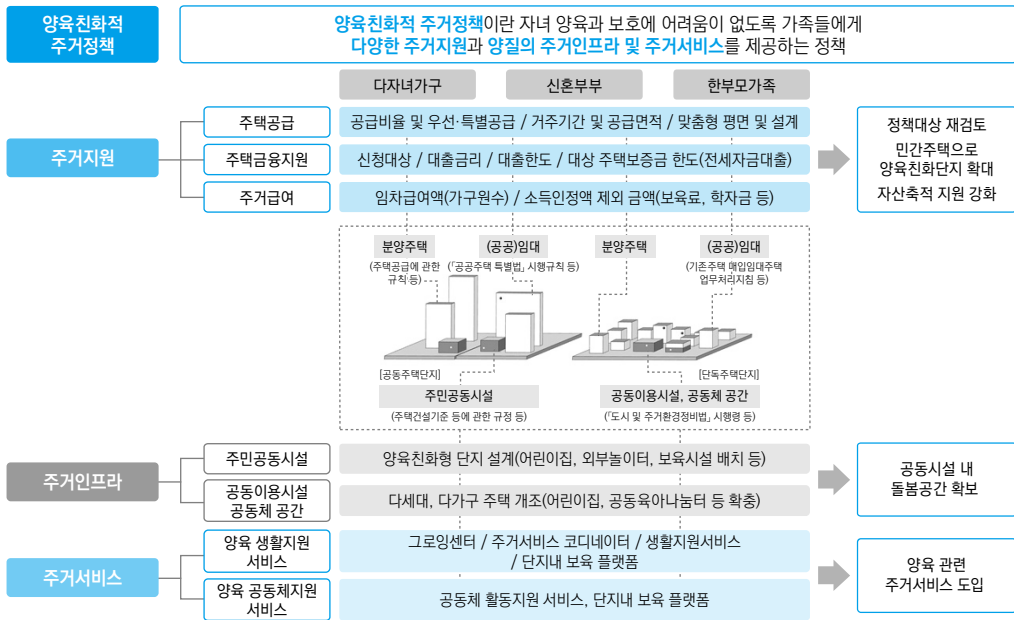
3)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며, 여기서는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관련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사항을 검토한다. 주거서비스 관련 법령은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표 3〉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관련 주요 법령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령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은 가급적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할 수 있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7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해야 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전문기관은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 지원,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56



[그림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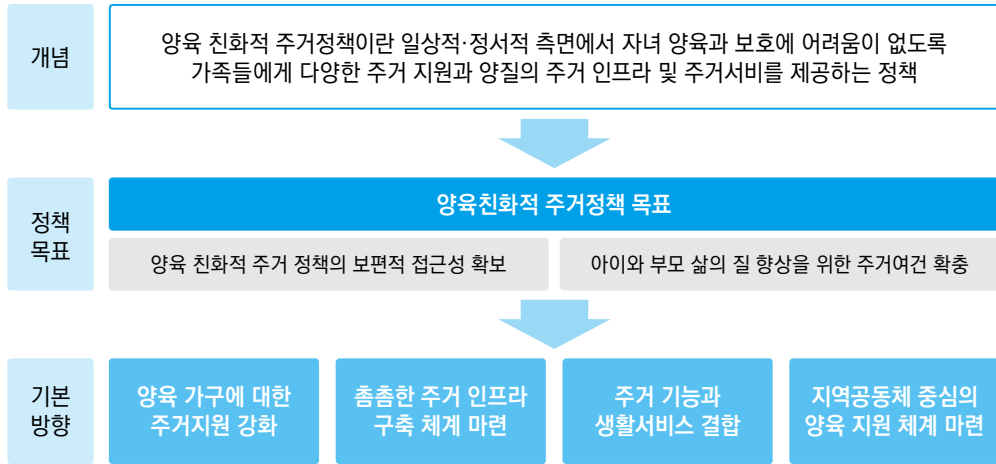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72

등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양육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거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행복주택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별 보육지원, 청소, 생활가전 렌탈, 카세어링 등의 서비스를 계획·추진 중이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보육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육아·교육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의 주거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계획한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주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기존의 이슈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주거서비스 확대 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발전 방안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정책현황 등을 토대로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와 주거여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여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육아 및 주거서비스 강화 등



[그림 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자료: 김지혜 외(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151

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주거지원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지원 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양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즉, 현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 계층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균 출생아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위치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인근이나 역세권 위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평형을 더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은 양육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두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충족한 주거인프라 구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인프라의 구축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공간의 제공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로서 '방과후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방과후 돌봄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

9) '20년 3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신혼부부 지원대상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포함하였고, 공공임대주택(공공리모델링,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등)공급시 다자녀 요건을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써 필요한 돌봄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 한편 단독주택 등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필요로 하는 인프라도 야외활동 가능 장소, 방과 후 공부방, 도서관, 운동시설 등 매우 다양하므로,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를 결합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기존 주택에서 벗어나 양육가구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가사부담을 줄이며, 취미를 공유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간을 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활동 연계형 돌봄, 가정순환형 돌봄 등 서비스의 공간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계획하는 주거 서비스 및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등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를 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확장 및 개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단위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많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는 부모들이 직접 공동육아 활동에 참여하여 일상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내의 아동을 함께 양육하는 것으로, 양육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부모 및 보호자 간 소통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주거단지 및 공동체에게 양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양육 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양육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내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 체계를 위한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아동과 부모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다함께돌봄센터'를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입법 예고(‘20.7)중이며,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필수시설 전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공동주택 개별 단지에 필요하게 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 다목 신고 기준 개정)이 일부 개정(‘20.11.10 시행)됨.